

3. 都市計画法施行規則改正(案) 立法豫告

建設部公告 第1992-90號 1992. 7. 23

1. 주요 개정 내용

가. 서울특별시, 직할시 및 도지사가 법률 및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하였을 경우 건설부장관에게 보고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함.

- 1) 도시계획의 결정 및 변경결정시는 관계조서와 도면 및 변경사유서
- 2) 도시계획사업에 관한 업무는 그 처리내용

나. 도시계획입안자가 건설부장관에게 도시계획의 결정을 신청하는 경우 첨부하는 서류와 도면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정함.

- 1) 도시계획결정 및 변경결정조서와 도면
- 2) 도시계획입안에 따른 기초조사 자료
- 3) 주민의견청취 관련서류
- 4) 관계부처 협의서류

다. 현재 도시계획구역안에서 도시계획

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도시계획으로써만 이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교육법에 의한 유치원,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,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전세버스사업용 자동차 정류장,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 및 유아교육진흥법에 의한 새마을 유아원등 5개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계획으로 설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있으나, 앞으로는 도시계획으로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도시계획시설의 범위에 특수교육진흥법에 의한 특수학교 및 소방법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소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3,000㎡이상의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등 2개시설을 추가함.

라. 건설부장관, 시장 또는 군수가 행정관청이 아닌 자를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관보 또는 당해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공보에 사업시행지의 성명·주소 및 공사예정기간

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도록 함.

2. 의견제출

도시계획법시행규칙 개정(안)에 대하여
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992년 8월
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

설부장관(참조 : 도시국장)에게 제출하
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
여부와 그 사유 명시)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
성명), 주소

주택건설 2백만호 앞당겨진 내집마련